

(1) 제주수놓음 일자리지원센터 법률 교육 활동보고서

1. 일시

2011년 11월 11일(금) 13:10 - 15:30

2. 장소

제주시 삼도1동 553-5 영지빌딩 6층 제주
수놓음 일자리지원센터

3. 내용

일자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생
활법률교육

4. 교육참가인원

16명

5. 교육방식

1) 일반생활 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사례화하여 제시하고, 그 구제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2) 하지만 관련 사례와 연관되는 교육참가자들의 다양한 일상생활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어져 이에 대한 답변도 동시에 진행

되었고 실제 비중은 이 부분이 상당하였음

3) 총 4개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면서 발표자 이외의 교육자는 그 자리에서 교육참가자분들에 대한 상담도 동시에 이루어졌음

6. 교육내용

- 1) 물품구입사 및 금전대차시의 법률문제 - 채정식
- 2) 주택임대차의 법률문제 - 양영화
- 3) 근로관계에서의 법률문제 - 박성환
- 4) 관련 유관기관 소개 - 이연화

[별첨] 교육활동후기

(2) 교육활동 후기

1. 교육활동후기 - 채정식

수놓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헌법 제 1조이다.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이 시민(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경

제적인 상황과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현실상 이러한 명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에게서만 그 모든 권력이 나오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평등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놓음 활동을 하면서 발표도 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특히 이런 생각을 들게 한 사례가 있다. 갑과 을이 교통사고가 났다. 갑은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고 을은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다. 을이 횡단보도 녹색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갑이 차로 을을 치었다. 을은 그 사고로 인해 다쳤고 갑은 자신의 차에서 내려 을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만 주고 갔다. 을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갑에게서 사과의 말을 듣기는 하였고 갑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시 경찰관은 을에게 자신이 불러준 대로 받아쓰라고 하였다. 을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조서는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최소한 조서같은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시에는 사고 상황을 들었던 경찰관이 작성할시 을에게 이를 보여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 써져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인 갑이 을처럼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었으면 사건

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을까? 또는 갑이 못 사는 사람이고 을이 잘 사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슬픈 현실이다. 모두가 다 슬퍼하였으면 좋겠다.

둘째, 사랑이다. 법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에 도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자면 도덕이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정신적인 가르침을 주는 종교를 생각해 봐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4대 종교인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의 성인군자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랑이다. 인간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실천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히 못 사는 사람에게 사랑을 좀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셋째, 행동이다. 헌법 1조와 사랑을 생각하였다면 그 생각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였으면 한다.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조차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 또한 생각만 가진 사람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수놓음을 다녀와서 느낀 점 중 하나이다. 지금부터라도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 수놓음 활동이 여러모로 더욱 보람이 느껴진다.

2. 교육활동후기 - 양영화

“냉철한 이성, 뜨거운 가슴”이란 말처럼 우선 지역 주민들과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소통은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하여 쟁점을 잡은 뒤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뒤따라야 하겠지요. 그런데 아직 냉철한 이성을 가지지 못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애매하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 곳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해당 문제가 어떠한 법리와 관련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해야 할 절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사건 진행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변의 마무리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말이지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려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했는데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첫 번째 발표를 마무리하고 와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형식적인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결실로써 보여줄 수 있는 법률상담이 의미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에서 수눌음자활센터에서 받은 상담을 수업시간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관련 무료 법률 센터 등이 주변에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담당

자의 말을 들으며,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해 좀 더 관심과 비중을 가지고 수눌음자활센터에서 법률상담활동을 하며, 사건의 해결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늘면 좋겠습니다.

3. 교육활동후기 - 박성환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이곳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손을 먼저 내밀고 그들이 내민 손 또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거주외국인법문제클리닉 수업의 세부분과 중 하나로 하게 된 수눌음법률교육 활동은 이러한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시간이었다.

수눌음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간 일자리지원센터는 수눌음의 여러 사업 중 일자리지원사업의 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었다. 대부분 이곳에서 교육 및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돈과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은 겪었던 분들이다. 신용불량문제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의 문제, 가족 및 상속 문제, 채무관계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다양한 법률문제에 연관에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초 5~7명이라던 교육생들은 막상 도착해보니 16명이나 되었고 단순히 기본적인 사례와 법률적인 용어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충분할 줄 알았던 교육은 내 예상과는 달리 수많은 질문 공세로 빠듯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법률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률은 여기 이분들에게는 여전히 멀기만 한 것들이었다. 용어의 어려움, 절차의 복잡함,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존재, 단순히 인터넷에 잠깐 검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왜 법률전문가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것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되면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 불균형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법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법률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또한 이와 같다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적극 발 벗고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으로서 의욕은 있었지만 아직 실력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많은 질문들은 그분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로 인한 고민을 그 한숨의 깊이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리 크지 못했다. 그분들의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하기 위해선 우선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언이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점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덧붙이자면, 수놓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법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 이 분들의 문제는 그 현황이 시급한 지금 당장의 문제였다. 또한 그 인원 또한 리걸클리닉을 수강하는 인

원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였다. 수놓음센터 측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의 이러한 자리를 굉장히 만족해하셨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확대를 제안하셨다. 생각건대, 리걸클리닉 수업이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의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놓음측과의 법률관련 활동의 확대는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리걸클리닉 수업의 하나의 세부분과로 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수놓음 측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활동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았다.

4. 교육활동후기 - 이언화

수놓음지역자활센터에 법률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부 산하 일자리지원센터로서 무료직업소개와 자활인큐베이팅 등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복지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활 프로그램 중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개인파산, 소액주택임대차, 근로계약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 응답을 하였으며, 개별적으로 법률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느낀 점은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을 적용시키기에 는 요원한 점이 있거나 우리가 책에서 사례로만 접하는 사건과는 달리 실제 사건들은 매우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약자들이라는 점에서 법의 한계와 보완점이 필요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이런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함양해서 실력을 연마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약하나마 희망을 제공하여 재활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우리도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여 피드백을 얻어 더욱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놓음은 제주도 방언으로 '폼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발표자료

[할부계약의 철회]

<CASE>

저는 가전제품판매상 乙로부터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냉장고를 인수받은 후에는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가 교부된 날이나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철회 가능(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8조)

- 어린이용 학습지나 기타 물품을 판매원이 가정집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전화로 구입을 권유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 바람
- 어느 경우이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아 두는 것이 유익. 매도인이 고의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 받게 됨

1. 철회 가능한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조)

-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의 철회는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 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 효력 발생 : 서면을 '발송한 날'

2.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조 1항 단서)

-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선박, 항공기, 중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날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
-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

3. 철회의 효과

- 원상회복의무
- 매수인은 인도받은 동산을 반환, 매도인
은 동시에 할부금 반환(6조 1항)
- 목적물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 부
담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불가(6조 3항)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CASE>

제 어머니는 친구분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분이 연락두절이 된 상태
라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머니는 최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변>

1. 실태

- 돈(금전)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 미침, 따라서
주의 요망

2. 일반적 주의사항

- 금전거래 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재력, 신용)을 스스로 확
인

-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는지
주의
- 법인과 거래 시는 상대방에게 법인을 대
표할 권한이 있는지(이사, 대표이사 등)
를 법인등기부를 통해 확인
- 본인 아닌 자와 거래할 경우 위임장 요
구(대리권 확인 요망)
- 채무의 변제기나 이자, 이율에 관한 사
항 포함된 계약서 작성하여 후일 분쟁
에 대비

3. 채권자 주의사항

- 입증 책임이 채권자에 있으므로 차용증
을 받아두거나,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줘야
- 가능하면 담보설정 요망(물적담보 : 부당
산에 저당권 설정, 채무자의 동산, 부
동산에 양도담보 설정 / 인적담보 : 채
무자 이외의 제3자의 연대보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받아두거
나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
- 소멸시효(10년) 주의 : 내용증명으로 채
무이행 최고 →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
-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일상가
사비용인지를 확인하여 두면 나중에
남편에게 청구 가능
- 불법원인급여 주의 : 회수 불가(도박이
나 강도 기타 범죄에 사용되는지 알고

돈을 빌려줄 경우)

4. 채무자 주의사항

- 불리한 조건 수정 요구 : 다급한 상황에서 불리한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꼼꼼하게 검토
- 일부 변제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고, 전부 변제 시 차용증이나 어음을 회수해야
- 채권자가 변제기일에 고의로 피하는 경우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담보물이 처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탁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안전
- 돈을 갚기 위해 고리의 사채를 쓰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청해보고 여의치 않은 경우 최초의 채권자에게 연체한 후 나중에 해결방도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

[연대보증인의 책임]

<CASE>

저는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甲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나, 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사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甲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고, 저는 甲의 면책결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면책절차

-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
- 면책결정의 효력 : 조세, 벌금, 과료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6조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

2. 면책결정의 효력 중 보증인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됨
- 판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

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 귀하는 乙은행이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 비교]

〈CASE〉

저는 중학생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곳, 저 곳 문의해 보니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는 현재 부양가족수가 3인 가구로 평가되어 2010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

구 최저 생계비 1,110,919원의 1.5배(개인회생시 법원인정 생계비)인 금 1,666,379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채무증대 과정에 있어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됨

1. 개인파산

-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으로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분들이 선택하는 제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
-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을 선고받으면 '면책을 받는 그 날로부터' 채무가 소멸되어 더 이상 빚을 갖지 않아도 됨
- 단 불이익 따름 :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임용 불가능, 신원조회시 파산 사실이 드러나는 등
- 제도운영 주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관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채권자의 범위 : 제한 없음
- 채무자의 요건 : 지불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음
- 채무조정 내용 : 전부 또는 일부면책 받을 수 있음

2. 개인회생

- 제도운영 주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관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채권자의 범위 : 제한 없음
- 채무자의 요건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 영업, 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채무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
- 채무조정 내용 :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음
-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승인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채권 추심행위 등이 금지됨
- 채무변제계획서는 5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짜야 하며, 채무자가 이 기간 동안 계획된 변제액을 성실히 갚는다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게 됨

3. 개인워크아웃

- 제도운영 주체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 채권자의 범위 :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채무자의 요건 : 연체정보자로 등록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5억원 이하의 채무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
- 채무조정 내용 : 원칙적으로 8년 동안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음(최소한의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액수를 최대 8년간 분할 상환)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불이익]

〈CASE〉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썬빙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합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호적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

〈답변〉

①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호적이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호적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호적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②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 당하지는 않으며, ③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음

1. 사법상의 불이익

-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

2. 공법상 불이익

-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 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음
-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됨

3. 신원증명사항 관련 불이익

- 과거에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①채무자의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②면책 불허가결정(일부면책 포함)이 확정된 경우 ③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

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임(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4. 금융기관 거래관련 불이익

-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동 예규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됨
- 단,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 단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CASE〉

저는 어머니와 둘이서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주택이 2011.02.04에 1억(경매비용 제외)에 매각(경락)되었습니다. 위 주택에는 모두 3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甲이 4,500만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이어서 乙이 4,000만원에, 그리고 모친이 3,000만원에 각각 전세를 살고 있으며, 甲→乙→모친 순서로 주민등

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한편, 가장 선순위로 2010년 K은행 앞으로 이미 5,0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매각(경락)대금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나요? (1,400만원)

<답변>

- 사례의 경우 제주도이므로 기타 지역에 해당하고, 乙과 모친만이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보증금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 甲은 이 권리를 갖지 못함
- 乙과 모친이 1,400만원씩(합계 2,800만원)을 최우선변제를 받고, 이어서 K은행이 5,000만원 배당받음
- 경락대금 중 나머지 2,200만원(1억-2,800만원-5,000만원=2,200만원)은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에 따라 甲이 전액 변제받고 배당 종료
- 결국 귀하의 가족은 1,6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함
- 나머지 액수는 집 주인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아야 함

1. 의의

-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

2. 적용요건

- 임차인은 경매신청의登記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함(제3조 1항)

- 다만, 보증금 전액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임차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⁵⁹⁾

3. 범위

-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 2분의 1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시·도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 범위	보증금 범위
1984.11.1 ~ 1987.11.30	30만원 이하	25만원 이하
1987.12.1 ~ 1989.11.30	5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1990.1.1 ~ 1995.1.31	2,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1,5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1995.12.1 ~ 2001.1.31	3,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2,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2001.2.1 ~ 2008.8.2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1급경계지역과 산업지역·도심·중·외곽역세권지역 제외	3천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4,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3,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4,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3,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2008.8.21 ~ 2010.7.31	5,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4,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5,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4,000만원 이하(단,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제주도 제외)

- >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개정)
-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천2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천900만원
-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이하 임차인 중 1천400만원

59) 제주도 주택에 3천 500만원에 입주하였어도 그 주택에 2001.9.15~2008.8.20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甲은 소액보증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저당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시행할 수 없기 때문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 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조사보고 명령
-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당요구 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고,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경매기일통지 등을 해주고 있음
- 통지 못 받거나 모르더라도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로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 해야
- 시기 :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 중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해야
- 방법 : 통상 법원에 비치된 서식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이므로 그 서식을 작성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됨

[채불임금의 구제]

〈CASE〉

저는 乙이 경영하는 회사(종업원 15명)에 3년간 근무하다가 신장병으로 6개월 전에 퇴직하였는데 임금과 퇴직금 3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乙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10일전 乙은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곧 신장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 지급거절 시 사용자 형사 처벌
- 체당금 신청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 제출
- 나머지 금액 민사소송 : 지방노동사무소 협조 얻어 무공탁으로 사업주의 일반재산 가압류, 본안소송절차 거쳐 압류한 뒤 강제집행
-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절차 밟고 있다면 바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등의 배당요구 가능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1. 임금의 결정 및 지급

- 임금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이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 체불 : 정해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109조)

2. 퇴직금의 지급

- 퇴직금 :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 적용범위 :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퇴직금제도가 적용(근로기준법 11조)
- 적용대상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 퇴직금액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
- 적용 불가 :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금 및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근로기준법 36조)
- 고용노동부는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감독업무 수행 : 법률 위반 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나 민사적인 강제집행까지 해줄 수는 없음

4. 체당금제도

- 의의 :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 체당금 :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
- 적용대상 :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결정 등 도산을 당한 경우
- 조건 :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후 도산해야,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 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 단 1,560만원 넘지 못함(체당금 상한액 고시)

5. 나머지 금액 구제방법

- 민사소송절차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받아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절차를 통한 임금청구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이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1. 의의

-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2. 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 불가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 경비원, 자가용운전기사 등)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 지급(최저임금법 5조 2항, 3항)

3. 효력

- 최저임금액이 결정, 고시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무효

4. 최저임금액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1년 1월 1일

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4,320원

- 2012년부터 4,580원으로 6.0% 인상

[산업재해보상]

<CASE>

개인건축업자 甲은 총 공사대금 1,500만원인 개인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저를 포함한 3인의 일용잡부를 고용하였고, 저는 공사현장 2층에서 일하던 중 발판이 무너져 추락하면서 다리골절상을 입고 노동능력상실을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산업재해보험법' 상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2,000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불가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손해 전보
- 손해배상청구액 범위 :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등(단, 본인의 과실부분 공제)
- 소송제기 위해 필요 서류 :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민법 766조)
- 미리 건축업자 소유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하여 보전조치 요망(강제집행재산 확보 위해)

1. 산업재해보상제도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등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요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2.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서 제외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조 1항 3호)

3.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 5조, 36조)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완치되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치료비 지급
- 휴업급여 : 치료기간 동안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장애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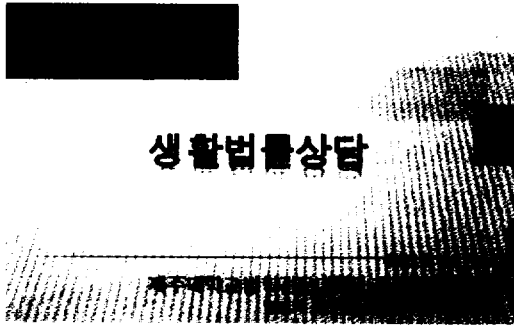
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 : 근로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행한 경우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례비 지급

4. 업무상 재해

- 보험급여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야
- 업무상 재해 :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입거나 사망한 것
- 업무와 재해간 상당한 인과관계 요구, 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구체적 예 :
 - 사업상 판매촉진 위한 접대행위 중 술을 마시다 사망(인정)
 - 원래 있던 질병이 직무상 과로로 악화되었다든지, 새로운 질병이 생겼든지, 사망에 이른 경우(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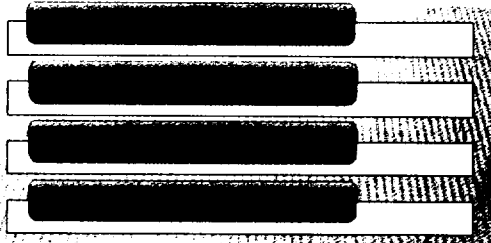
<Presentation File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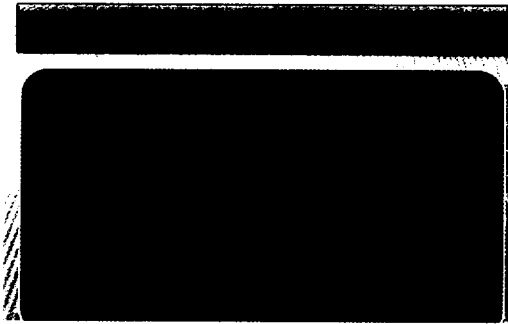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 자문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법률문제를 상담

(1)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조례제정 및 집행목차에 관한 자문
 (3)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된 국제투자 및 거래에 관한 자문
 (4) 도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거리의 자문
 (5) 제주대학교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6) 외국인과 관련된 법률문제의 자문

<순서>



서문
 제1회 상담사례
 제2회 상담사례
 제3회 상담사례
 제4회 상담사례
 제5회 상담사례
 제6회 상담사례
 제7회 상담사례
 제8회 상담사례
 제9회 상담사례
 제10회 상담사례
 제11회 상담사례
 제12회 상담사례
 제13회 상담사례
 제14회 상담사례
 제15회 상담사례
 제16회 상담사례
 제17회 상담사례
 제18회 상담사례
 제19회 상담사례
 제20회 상담사례
 제21회 상담사례
 제22회 상담사례
 제23회 상담사례
 제24회 상담사례
 제25회 상담사례
 제26회 상담사례
 제27회 상담사례
 제28회 상담사례
 제29회 상담사례
 제30회 상담사례
 제31회 상담사례
 제32회 상담사례
 제33회 상담사례
 제34회 상담사례
 제35회 상담사례
 제36회 상담사례
 제37회 상담사례
 제38회 상담사례
 제39회 상담사례
 제40회 상담사례
 제41회 상담사례
 제42회 상담사례
 제43회 상담사례
 제44회 상담사례
 제45회 상담사례
 제46회 상담사례
 제47회 상담사례
 제48회 상담사례
 제49회 상담사례
 제50회 상담사례
 제51회 상담사례
 제52회 상담사례
 제53회 상담사례
 제54회 상담사례
 제55회 상담사례
 제56회 상담사례
 제57회 상담사례
 제58회 상담사례
 제59회 상담사례
 제60회 상담사례
 제61회 상담사례
 제62회 상담사례
 제63회 상담사례
 제64회 상담사례
 제65회 상담사례
 제66회 상담사례
 제67회 상담사례
 제68회 상담사례
 제69회 상담사례
 제70회 상담사례
 제71회 상담사례
 제72회 상담사례
 제73회 상담사례
 제74회 상담사례
 제75회 상담사례
 제76회 상담사례
 제77회 상담사례
 제78회 상담사례
 제79회 상담사례
 제80회 상담사례
 제81회 상담사례
 제82회 상담사례
 제83회 상담사례
 제84회 상담사례
 제85회 상담사례
 제86회 상담사례
 제87회 상담사례
 제88회 상담사례
 제89회 상담사례
 제90회 상담사례
 제91회 상담사례
 제92회 상담사례
 제93회 상담사례
 제94회 상담사례
 제95회 상담사례
 제96회 상담사례
 제97회 상담사례
 제98회 상담사례
 제99회 상담사례
 제100회 상담사례
 결론



▶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기관을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 정확한 사실의 이해 없는 법률상담은 자칫 잘못된 법률적 결론과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감사합니다.

